
Policy and Law Report _Vol.13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5.30.~ 2022.06.06) -

June 07,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기획재정부	<p>•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벤처기업 간담회 개최</p> <p>기획재정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벤처기업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함</p> <p>향후 벤처기업 정책방향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벤처기업의 빠른 스케일업을 위한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중점 지원 - 대학을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탈바꿈하고, 대-중견기업과 연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확산하는 등 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p>②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결성 관련 규제 개선, 세제지원 확대 등 민간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시장의 애로가 많은 후속투자 및 M&A, IPO 등 회수시장 활성화 중점 추진 - 복합금융 등 벤처투자 펀딩 방식을 다양화하고, 복수의결권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지속 확충 <p>③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적극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 확충 -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 	2022-06-03
고용노동부	<p>•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p> <p>고용노동부는 스마트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되고 있음을 고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힘</p> <p>* (시행일) '22. 6. 2. (행정예고 기간) '22. 4. 11. ~ 5. 6.</p> <p>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총 공사금액의 2~3% 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음</p> <p>*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p>	2022-06-02

부처	내용	일시
	<p>주요 사용범위 확대 품목으로는</p> <p>① (스마트 안전장비:신설) 산재예방, 작업 지휘 감독 목적을 함께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p> <p>② (위험성평가 발굴 품목:신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하여 노·사가 합의*한 품목 사용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안전보건위원회 및 제75조 노사협의체 등에서 결정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p> <p>③ (휴게시설:확대) '22.8.18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 * 기존에는 혹한·혹서 시 작업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해체·유지하는 비용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음</p> <p>④ (겸임 안전관리자 임금:확대)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 안전·보건 관리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50~120억원 건설현장은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단계적 도입 중</p> <p>⑤ (기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 구입비 상시 허용,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他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 허용,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나목에 따라 안전·보건전담조직 설치가 의무화</p>	
<p>국토 교통부</p>	<p>•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및 대응방안 모색</p> <p>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LH,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집중 점검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자재공급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관급자재 납품단가 인상, 시장가 반영시기 단축으로 적기 납품 유도 - 정부, 지자체,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사비 조정 독려 <p>② 주택공급영향 최소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검토 - HUG 분양보증 수수료 환급,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인하 등 부담완화 지원 <p>③ 기술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는 대체 자재 발굴, 신공법 개발 등으로 공사비 절감 노력 - 정부는 혁신 R&D 지원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p>2022-05-30</p>

부처	내용	일시
국토 교통부	<p>•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3.5억 미만) 수주 제한 범위 한시적 확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5.31~6.9)</p> <p>국토교통부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힘</p> <p>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23년 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 5천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됨</p> <p>*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3.12월까지 종합업체 수주 참여 제한</p> <p>이번 개정안은 지난 '21년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음</p>	2022-06-02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기획재정부</p>	<p>•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5.31. 시행)</p> <p>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보유기간의 계산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 양도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1세대 1주택의 주택 보유기간 계산방식 일원화 (제154조제5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모든 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는 달리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택 매물이 동결되는 부작용을 방지함 <p>②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제155조제1항제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의 다른 주택을 신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입요건 없이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p>③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제167조의3제1항제12호의2, 제167조의4제3항제6호의2,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의2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2호 신설, 부칙 제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정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에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을 가중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주택매매의 활성화를 유도함 	<p>2022-05-31</p>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p> <p>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등의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됨.</p> <p>이에 따라 당해 개정안에서는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문구조항을 구체화하였고, 민간부문 녹색소비 확산 기반 마련과 함께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2개 시험방법을 개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프리미엄 인증 운영취지 및 표시방법 명확화 (제4조제4항)</p> <p>② 환경표지 대상제품 신설·삭제 및 명칭 변경 (안 별표1)</p> <p>③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내 정책 및 환경 현안·관리수준 등과 연계하여 51개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 현행화·개선 (안 별표2)</p> <p>④ 명확한 시험방법 운영을 위해 2개 시험표준 내 용어정의 및 세부 조건 등을 개선 (안 별표3)</p> <p>※ 의견 제시기간 : 5/31(화)~6/21(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녹색산업혁신과)로 제출</p>	2022-05-31
금융위원회	<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재난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불카드 방식의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함</p> <p>① 선불카드 발행권면한도 제한의 예외사유 규정 (안 제7조의2)</p> <p>- 긴급한 재난을 이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를 30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p> <p>※ 의견 제시기간 : 6/3(금)~6/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로 제출</p>	2022-06-03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정무위원회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등 (안 제9조제30항·제31항, 제229조제6호 및 제229조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등을 정함 <p>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 요건 (안 제12조제2항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 요건을 갖추도록 하되, 대주주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도록 하여 벤처캐피탈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자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 <p>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5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기업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와는 다른 자산운용의 제한이 필요함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자산운용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되,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 <p>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금전차입 등 (안 제83조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을 차입하거나 금전을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금전차입이나 금전대여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022-05-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p>⑤ 자산운용의 제한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의 적용 (안 제444조제9호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하여 법정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투자하는 행위 등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과학기술 정보통신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p>최근 온라인 상에서 사이버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p> <p>그러나 온라인 상의 사이버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그 유형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사이버폭력의 행위유형에 사람의 인격을 표상하는 캐릭터, 계정 등 디지털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p>	2022-05-2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p>• 「<u>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u>」</p> <p>현행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코치·심판 등 경기관계자, 경기단체 및 주최단체의 임직원, 발행사업 종사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알선, 양도 및 환급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p> <p>하지만 현행법은 수탁사업자가 구매·환급제한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환급 제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발행사업자,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p> <p>또한 현행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내에 체류 중인 내·외국인 모두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환급 시에도 내·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차등이 없이 환급을 진행중에 있음.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경기가 되는 국내 프로리그의 경우, 대부분의 경기단체가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외국인 선수, 지도자의 수는 142명으로 제한 대상 경기관계자 전체의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p> <p>그러나 해당 외국인 선수나 지도자가 국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문제가 추후 확인되더라도 해당자의 거주지가 해외인 점,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이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외국인 제한대상자의 투표권 환급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중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후속 조사 및 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음</p> <p>따라서 구매·환급 제한대상자 전체의 구매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대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p>	2022-06-02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7(화)	현안입법 알리기 - 주민투표 활성화 방안 마련	
	6/8(수)	World & Law - 디지털 화폐, 믿고 쓸 수 있을까?	
예산정책처	6/8(수)	「금융공공기관의 정책금융 운영 현황 분석」 발간	
입법조사처	6/9(목)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최근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시사점	
	6/9(목)	「이슈와 논점」 보고서 발간 - 북한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백신지원 전망	
	6/7(화) 10:00	전문가 간담회 -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자 추이 분석 - 권혁욱 교수 (니혼대학교)	
	6/10(금) 14:00	전문가 간담회 -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 허준영 교수 (서강대학교)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8(수) 14:00	(충청권 지역경제의 버팀목) 지방은행 설립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정문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8(수) 14:00	금융범죄 및 사금세탁 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자 보호	김용판 의원실,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6/8(수) 14:00	지역방송과 「미디어 자치권」의 미래	김영식, 이상민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9(목) 10:00	에너지 산업에서의 기계공학의 역할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9(목) 10:00	수자원매립지 관리공사의 역할과 발전방향	임종성 의원실, 환경부	의원회관 1세미나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6/9(목) 14:00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철규, 한무경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6/9(목) 15:00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한국과 네덜란드의 중장기 전환 시나리오 및 혁신전략	이학영, 박대출 의원실 외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1] 지난 주 뉴스레터(제13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예산정책처	주중	「2022 경제전망」 발간	
	주중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제19호 발간	
	주중	「NABO 경제동향」 5월호 발간 -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 분석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30(월) 14:00	기업 발목에 걸린 모래주머니 없애기 [첨부1] [첨부2]	윤창현 의원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문응필 | 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